

ISC-3011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개·폐	일 자	시 행 일	승인권자	비 고
제정	2024.12.02.	2024.12.02.	대표이사	
개정	2026.06.29.	2026.06.29.	대표이사	
관 련 사 규				

ISC-3011-2/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제 1 장 개요

1) 목적 및 대상

일진전기는 창조적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원가 경쟁력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전기 분야의 선도적인 Total Solution 기업으로서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협력사를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에서 지켜야 할 협력사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과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등을 지지하며, 관련 국내외 법령인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거합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일진전기의 협력사 및 협력사의 근로자, 일진전기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대행사의 대리인, 도급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모든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협력사가 행동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일진전기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협력사 책임과 역할

일진전기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와 함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노동, 환경, 윤리 관련 리스크를 식별·예방·완화하고자 합니다. 일진전기의 모든 협력사는 사업 운영 및 경영에서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진전기 및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된 사항의 준수 여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진전기는 협력사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협력사 행동규범은 모든 준수 및 의무사항을 명시한 것은 아니며, Global 거래환경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ISC-3011-3/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제 2 장 환경경영

일진전기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추구하며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사에도 동일한 원칙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기본 인권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명권이며, 환경오염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기업은 환경오염이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조직원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영향을 완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환경경영 추진의 기본 방침이 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3자 기관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음)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문서화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설비 및 시스템 도입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저탄소 제품 생산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전 사업장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scope2)을 기록 및 관리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일진전기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자원 사용 저감

- 협력사는 자원 사용 저감을 위해 원부자재 사용량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물, 화석연료, 광물 등의 천연자원을 생산 프로세스 개선, 대체 자재 사용, 기타 수단을 통해 보존해야 합니다.

4) 화학물질 관리

-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라벨의 부착 등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ISC-3011-4/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5) 폐기물 관리

-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류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대기오염물질 관리

-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식성 가스, 미세먼지,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7) 수자원 관리

-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 및 폐수 배출에 따른 오염 경로를 통제하고, 수자원 보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모든 폐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방출 또는 폐기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 3 장 노동·인권

일진전기의 공급망 내 모든 거래 협력사는 국가, 사회, 기업 모두가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일진전기와 협력사 모두는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이념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1) 정책 및 체계 수립

-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도적 대우 및 차별 철폐의 노력, 공정한 채용,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인신구속 계약에 의한 근로 금지 및 공정한 계약,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근로조건 준수 및 복리후생 제공 등을 보장하는 인권 정책과 운영을 위한 조직 등 체계를 보유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 자체 규정 및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ISC-3011-5/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2) 결사의 자유 보장

- 협력사는 근로자가 현지 법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교섭 및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 강제 근로 금지

-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 근로(노예, 인신매매 등 모든 비자발적 근로)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신분증, 여권, 노동허가증 원본 양도, 수수료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자유로운 퇴직을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저하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아동 고용 금지

*‘아동’이란 통상 만 15세 미만, 의무교육이 끝나는 나이, 현지 법규로 정해진 고용 가능한 최저 나이 중 가장 높은 나이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연령(나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장 내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즉각 고용을 중지하고 연령 검증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시, 안전 보건상 유해한 업무(야간 근무 및 초과근무 포함)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실습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근로 시간 준수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응급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협력사는 휴식을 포함한 근로 시간을 법에 따라 관리하며, 초과근로 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현지 법규 및

ISC-3011-6/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유급/무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하며, 징계 수단으로 임금에 대한 삭감을 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인도적 대우

-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체벌, 학대,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관련 정책 및 위반 시 징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8) 차별 금지

-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안전·보건

일진전기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데 있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 중인 모든 협력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성과를 직원 보호 의무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척도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협력사는 안전보건 개선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며, 사고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 담당자와 책임자를 임명하여 근로자에게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ISC-3011-7/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ISC-3011-8/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ISC-3011-9/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1) 투명경영 및 반부패

-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2) 이해 상충 및 불공정 거래 방지

-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 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3) 내부고발자 보호

-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충 또는 비윤리 행위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한 (익명) 채널을 구축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사 및 내부고발자의 신원 보호 프로그램(비밀 및 익명성 보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정보보호

-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 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책임 있는 자재 구매

-

일진전기는 *분쟁광물 사용 금지 및 책임 있는 광물 소싱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 분쟁지역(콩고민주공화국 등 10개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ISC-3011-10/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금)으로써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광물 수출을 통한 자금을 내전 및 갈등 조장에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우려가 되고 있음.

- 일진전기는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광물 채굴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착취 등의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근절하고 채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진전기는 아프리카 10개국(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을 포함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일진전기는 자사의 분쟁광물 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일진전기 협력사들은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일진전기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일진전기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등을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

RMI의 가이드라인(Examples of Procedures to Identify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을 기반으로 위험지역(CAHRA)을 설정하여 공개할 수 있음.

RMI에서 제공하는 분쟁 및 고위험지역 광물 보고양식인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와 EMRT(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 PRT(Pilot Reporting Template) 등을 활용해 협력사는 분쟁 및 고위험지역 광물 현황 정보와 공급망 내 제련소 정보 등 위험지역을 식별할 수 있음.

- 일진전기가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거나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ISC-3011-11/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 인증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진전기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제 6 장 경영시스템

기업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책임과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소비자들은 점점 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그리고 규제 기관들은 보다 엄격하고, 더 많은 포괄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자세한 보고서 요구 등으로 정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진전기와 협력사들은 업계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및 보고 체계 확립, 책임 준수 및 실천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1) 기업의 준수 의지 표명

-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한 성명서를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 현지 언어로 게시해야 합니다.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협력사는 경영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명시하고, 경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

협력사는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4) 리스크 평가 및 관리

-

협력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법, 환경, 보건, 노동 관행, 윤리 등의 리스크 및 위험성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파악된 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도가 큰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5) 고충 처리 및 커뮤니케이션

-

협력사는 본 규범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규범의 개선에 활용하며, 지속적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정책, 관행, 기대 사항, 성과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및 협력사 등과 분명히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공유해야 합니다.

ISC-3011-12/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6) 정보 관리

-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 이행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목표와 실행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령, 산업단체, 사업 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SC-3011-13/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별첨1] 실사(Due diligence) 정책

- 실사기준: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Minerals (5-Step Framework)]

No	항목	내용
1	경영시스템 구축	• Due diligence 정책 및 시스템 구축(OECD Guidance Annex II 근거) • 협력사 포함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계약서 내 관련 조항 포함) • 공급망 이력 관리
2	리스크 식별 및 평가	• 공급망 리스크 식별 • OECD Guidance Annex II에 근거한 협력사 리스크 평가
3	리스크 관리	•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단계에서 확인된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 위험 평가 결과 및 관리계획에 대해 책임자(임원급)에게 보고
4	공급망 실사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근거한 Due diligence 실시(독립적인 제3자 기관 Audit 수행)
5	실사 결과 보고	• Due diligence 결과 공개(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업 보고서 등)

[별첨2] ‘일진전기 협력사 행동규범’ 참고자료

본 규범은 다음의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 정보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BA Code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standards/code-of-conduct>
- 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
- ISO 14001, ISO 45001, ISO 27001, ISO 27701 www.iso.org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ww.oecd.org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www.oecd.org/en/publications/oecd-due-diligence-guidance-for-responsible-supply-chains-of-minerals-from-conflict-affected-and-high-risk-areas_9789264252479-en.html
- SA8000 and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http://www.sa-intl.org/>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ww.un.org/Overview/rights.html

ISC-3011-14/14	ESG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4.12.02.		
개정: 2026.06.29.		

일진전기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당사는 ‘일진전기 협력사 행동규범’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당사는 ‘일진전기 협력사 행동규범’을 명확히 숙지하였으며, 행동규범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진전기와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당사는 일진전기가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설문,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사에도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일진전기에 보고할 것입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위반할 시, 일진전기의 내부절차 및 지침에 따라 거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거래가 중단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 DATE
- COMPANY NAME
- CEO NAME